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불합리한 조항 개정
- 중복적 조목 존치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위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의 교부정지 또는 취소 조항의 중복부분 통합.

첨부

-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중 “다만, 도지사가 …… 아니한다”의 단서삭제

제18조중 “명할수 있다”뒤에 “다만, 7호내지 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8조중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말미암아 설계내용에 하자가 있을때
8.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공사에 하자가 있을때 를 신설한다.

제19조(동전)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때 4. 사업성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때 5.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때 6. 허위의 수단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때	3. 생략 4. " 5. " 6. " 7. <u>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말미암아 설계내용에 하자가 있을때</u> 8. <u>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공사에 하자가 있을때</u>	삭 제	
<p>제19조(동전)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1.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말미암아 설계내용에 흠이 있을 때 2.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공사에 흠이 있을 때			